수업관리운영위원회규정 3-1-33

규정번호 3-1-33
제정일자 2019.10.21
최근개정 2024.7.24
개정차수 1차 개정
관리부서 학사지원팀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학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수업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수행한다.

1. 수업운영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
2. 수업운영 모니터링 및 전자출결 점검·개선에 관한 사항
3. 출결, 시험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
4. 강의평가 항목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
5. 수업 질 관리 체제 모형 개발 및 운영·분석에 관한 사항
6. 기타 수업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4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교무처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(개정 2024.7.24.)

제5조(회의)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,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.

제6조(의결)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.(제3조제2항, 제4조제2항)